

「아파트관리비자동납부」약관

제1조 자동납부 방법

- ① 은행은 거래처가 납부하여야 할 아파트관리비(이하 관리비)에 대하여 거래처가 지정하는 계좌에서 지정하는 납부마감일에 통장 및 지급청구서나 거래처의 별도 지급청구 없이 출금하여 납부(이하 자동납부)합니다.
- ② 자동납부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납부 개시 월은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부터입니다.

제 2 조 납부자금 부족시 처리

- ① 자동납부 지정계좌의 예금잔액(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납부마감일 현재 관리사무소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납부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자동납부 하지 않습니다.
- ②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관리사무소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 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처와 관리사무소가 혐의하여 정하기로 합니다.

제 3 조 출금기준 및 우선순위

- ① 관리비 자동납부 금액은 해당 납부마감일 은행영업 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.
- ② 관리비 납부마감일에 수 종의 자동이체를 하여야 하는 경우의 자동이체를 위한 출금우선 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 4 조 신청내용의 변경 및 해지신고

거래처가 신청내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납부마감일 영업시간 이내에 은행에 서면신고 하여야 합니다.

제 5 조 준용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관련예금약관, 계좌간자동이체약관, 은행과 관리사무소간 아파트관리비수납대행계약서를 적용합니다.

제 6 조 이체일 및 이체금액 미지정 때 처리

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, 채무 등 이체대상만을 지정하고 이체일 및 금액에 대한 지정없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는 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체합니다.

제 7 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

전월 말일 기준으로 5개월 연속 미이체 시 SMS 등과 같은 전자적 매체로 통지하며, 6개월이상 이 체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이체 등록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.

제8조 준용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관련예금, 신탁약관 및 은행규정을 적용합니다.



부 칙

(시행일) 제7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[별첨]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

1. 영업개시전 : 정기예금 이자지급

2. 영업시간중 : 타행자동이체, 대출이자, 신탁, 요구불이체, 선일자 등

영업점 직접처리분

3. 영업시간후 : 다음 그룹 순서에 의해 처리되며, 그룹내 처리 순서는 없음.

-1그룹: 대출이자, KB 카드대금, 영업점 개별 처리건(APT 관리비 등)

- 2 그룹: 대외청구자금(VAN, CMS, GIRO 등)

- 3 그룹 : 기타 수신 계좌이체, 적립식 예금이체(신탁포함), 요구불간 이체등

※ 납부자자동이체 :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